

의안번호	제555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
조례안

발의자	박재주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4월 12일

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

(박재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4월 12일

발 의 자 : 박재주 · 김현문 · 이정범
박병천 · 박용규 · 유상용
이양섭 의원

1. 제안 이유

장애학생의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참여와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교육감의 책무 (안 제3조)
- 다. 지원사업 내용 (안 제4조)
- 라.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바. 포상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: 붙임

나. 비용추계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

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학생”이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.
2. “문화예술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.
3. “체육”이란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분야의 소질과 역량을 발굴하고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 사업)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보장하고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2.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관련 행사 개최·참여 지원
3.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교류 지원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·체육 활동 보장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, 「학교체육진흥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 및 연수)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·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전문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(약칭: 특수교육법)

[시행 2023. 4. 19.] [법률 제18992호, 2022. 10. 18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, 2017. 12. 19.>

1.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
2.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
3.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
4. 특수교육의 내용,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·개선
5.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
6.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
7. 특수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 및 시설·설비의 확충·정비
8.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·교구의 연구·개발 및 보급
9.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
10.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
11.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
12.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0조(교육과정의 운영 등)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,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9. 12. 10., 2021. 7. 20.>

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

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, 연령, 현재 및 미래의 교육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10.>

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□ 학교체육 진흥법

[시행 2023. 9. 15.] [법률 제19234호, 2023. 3. 14., 타법개정]

제14조(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유아교육법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장애인복지법

[시행 2024. 2. 13.] [법률 제20290호, 2024. 2. 13., 일부개정]

제4조(장애인의 권리) ② 장애인은 국가·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,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: 발달장애인법)

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13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27조(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, 전시관, 박물관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·참여·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, 놀이기구,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문화예술진흥법

[시행 2023. 12. 21.] [법률 제19480호, 2023. 6. 20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예술”이란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, 게임,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, 정신적,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(印象), 견문,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.

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며,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업무추진이 가능하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